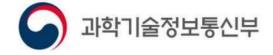
## 2025년 『시반도체 시제품 제작지원』 시업 공모 안내서

2025. 5.





# 목차

I. 사업 개요 ····· 3
1. 추진배경 및 목적 4
2. 사업내용 5
3. 추진체계 및 주요 역할 6
4. 추진일정 7
Ⅱ. 사업 지원 내용 및 신청 안내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8
1. 지원내용 9
2. 사업신청 및 접수 14
Ⅲ. <b>지원과제 선정 방안</b>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6
1. 선정 절차
2. 평가 방법 및 기준 17
Ⅳ. <b>사업수행 안내 및 유의사항</b> ····· 20
1. 사업수행 안내 21
2. 유의 및 제재사항 안내 23
V. 기타 사항 ······ 24
1. 선정 취소대상 25
2. 문의처 26
[별첨]

- 1. AI반도체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신청서류 양식 및 요령
- 2. 사업수행 관련 규정 및 세부지침

## 사업 개요

## 추진배경 및 목적

## □ 추진배경

- **AI반도체는 유망시장**이나 개발·상용화에 **막대한 비용**\*이 투입되어, 적시 **레퍼런스·초기시장**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**사업 존속**에 한계
  - \* AI반도체 칩 개발에 평균 200~400억원 소요('24.5, 한국반도체산업협회)

#### <AI반도체 수요영역별 시장전망>

(단위	구분 : 백만달러)	'23	′24	'25	′26	'27	'28	'29	CAGR ('24~'29)
B2C	일반 소비자	1,971.2	2,322.2	2,893.1	3,496.4	4,140.6	4,821.6	5,541.3	19.0%
	CSP	39,233.6	76,363.2	102,555.8	120,153.9	139,674.1	160,194.8	182,725.1	19.1%
	헬스케어	4,335.7	9,018.0	12,924.4	16,137.3	19,966.7	24,345.6	29,489.5	26.7%
	금융	3,030.3	6,209.5	8,771.7	10,800.5	13,184.0	15,866.2	18,976.1	25.0%
B2B	리테일/ 이커머스	2,145.4	4,425.9	6,293.5	7,799.1	9,580.0	11,599.8	13,956.4	25.8%
	미디어/ 엔터테인먼트	4,368.9	8,694.7	11,924.8	14,250.7	16,877.9	19,700.1	22,843.3	21.3%
	자동차	2,576.3	5,213.2	7,272.8	8,844.2	10,663.4	12,676.3	14,977.0	23.5%
	기타	3,015.1	5,957.6	8,109.9	9,615.7	11,294.7	13,069.1	15,016.1	20.3%
B2G	정부조직	2,723.8	4,952.2	6,171.2	6,656.1	7,055.5	7,292.7	7,385.9	8.3%
	합계	63,400.3	123,156.4	166,917.3	197,753.9	232,437.0	269,566.2	310,910.8	20.3%

- 중국의 경우, 클라우드·디바이스에 자국 AI반도체를 탑재하는 등 상용화 지원을 통해 AI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 중
  - ※ 중국은 화웨이 AI반도체 Ascend910을 기반으로 자국 LLM "딥시크"를 활용한 상용 AI서비스를 제공, 이를 디바이스까지 확장하며 자국 AI반도체 수요 확대 추진 중
- 시장 수요기반 국내 AI반도체 팹리스 기업의 빠른 시제품 생산, 성능 테스트·검증 통해 핵심 시장 내 조기 진출 및 상용화 필요

## □ 추진목적

- 사업화 역량을 보유한 AI반도체 팹리스 기업에 대해, 시장 수요 맞춤형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유망 AI반도체 적시 사업화 강화
  - AI비전, 상황인식(추론), 온디바이스AI 및 LLM 등 AI 연산을 지원하는 엣지/서버형 AI반도체에 대한 시제품 제작지원 및 성능 검증 확대

## 2 사업내용

## □ 지원내용

- 초기 AI반도체 설계검증 시제품 제작용 MPW 비용 등\* 지원
  - \* MPW 비용 : SW개발, AI반도체 설계IP 라이선스 구매, 설계검증(프론트엔드, 백엔드디자인서비스), 파운드리 MPW 셔틀비용, 패키징 비용 등
- ※ 사업성과물 : MPW 제작소요 평균기간 1~2년을 감안, '25년 사업기간 내 지원 통한 'AI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계약서' 및 '설계칩 시뮬레이션 결과서' 제출(종료시) 차년도 최종 패키지화된 AI반도체 제출(실물)

## □ 지원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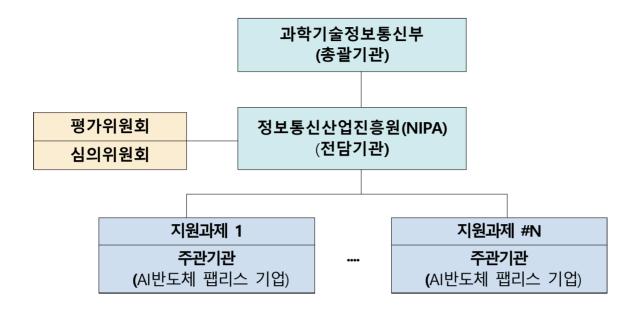
- ※ 상세내용은 II. 사업 지원 내용 및 신청 안내 참조
- 국내 AI반도체 팹리스 기업(단독)
  - \* 단독(1개 社) 과제수행 형태로만 참여 가능하며, 기업(대학/기관) 간 컨소시엄 참여 불가
- □ **지원규모** : 총 10개 과제, 과제당 최대 19.6억원 이내 지원
  - 초기 AI반도체 설계검증 시제품 제작용 MPW 비용 등 지원

지원분야	공정(나노)	지원규모	비고(평균)
Α	2~20 미만	4개×1,960백만원 = 7,840백만원	12, 14나노 공정
В	20~30 미만	3개×1,060백만원 = 3,180백만원	28나노 공정
С	30 이상~	3개×360백만원 = 1,080백만원	40나노 공정

- ※ 지원분야별 미달 또는 선정평가 결과 해당분야 선정대상이 없는 경우, 타 분야 지원과제중 평가 점수(고득점순)와 지원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지원 할 수 있음
- ※ 공정별 MPW 비용을 감안하여 지원규모 차등지급, 사업비(정부) 지원규모는 사업예산(정부)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
- □ 지원(사업) 기간 : 협약체결일\* ~ 2025. 12. 31.까지
  - \* 협약체결일 : '25. 7. 1일자로 추진예정(사업비 집행기준일)

## 추진 체계 및 주요 역할

3



구 분	주 요 업 무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총괄기관)	o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o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
정보통신산업진흥원 (전담기관)	o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o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o 사업관리, 예산집행 및 정산, 성과평가
평가위원회	o 지원사업 및 지원기관의 평가·선정, o 지원사업 수행성과 평가
심의위원회	o 사업비 조정, 제재조치 등 과제관리에 필요한 심의 o 사업비 산정 적정성 검토 등
수행기관 (과제신청 기업 등)	o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o 과제 진행 현황 및 결과 보고 o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 등

## 4 추진일정

구분	내용	비고
. –		•
사업공고	• 공고 일자 : 2025. 5. 29(목)	NIPA 홈페이지
$\hat{\mathbb{T}}$		
사업계획서 접수	<ul> <li>전산접수일정 : 6. 12(목)~ 6. 30(월) 15:00까지</li> <li>접수서류 :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</li> </ul>	NIPA 홈페이지
Û		
선정평가	• 평가대상 기업에게 별도 통보(일정 등) 예정 • 평가형식 : 적합성검토, 서류 및 발표평가	평가위원회
<u> </u>		
최종선정	• 지원과제 선정결과 발표 및 사업비심의(7월 중)	-
<u> </u>		
협약체결	• NIPA-주관기관 간 협약체결(7월)	전자협약
<u> </u>		
사업 수행	<ul><li>사업비 지급</li><li>과제 수행</li></ul>	-
Û		
수행관리 및 이행점검	• 과제 진도 및 예산 점검 진행(중간 평가)	NIPA
<u> </u>		
사업종료 및 결과평가	• 결과보고 및 최종 평가(12월)	평가위원회

※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 및 우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사업 지원 내용 및 신청 안내

## 1 지원내용

## □ 지원분야

- (시제품 제작) 초기 AI반도체 설계검증 시제품 제작용 MPW 비용 등 지원
  - \* MPW 비용 : SW개발, AI반도체 설계IP 라이선스 구매, 설계검증(프론트엔드, 백엔드 디자인서비스), 파운드리 MPW 셔틀비용, 패키징 비용 등

지원분야	공정(나노)	지원규모	비고(평균)
Α	2~20 미만	4개×1,960백만원 = 7,840백만원	12, 14나노 공정
В	20~30 미만	3개×1,060백만원 = 3,180백만원	28나노 공정
С	30 이상~	3개×360백만원 = 1,080백만원	40나노 공정

#### < AI반도체 개발 프로토타입과 양산버전 차이점(예시) >

구분	개발 프로토타입	양산 버전
목적	기능 검증 및 성능 평가	신뢰성 검증 및 대량 생산
칩 버전	초기 Engineering Sample	최적화된 최종 실리콘
PCB	단순화된 PCB, 저비용 부품	신호 무결성 최적화, 고품질 부품 적용
전원설계	기본적인 전력 공급 구조	고효율 전원 관리 최적화
펌웨어 및 드라이버	기본 기능 지원	최적화된 성능, OS 호환성 검증
쿨링 시스템	공냉 기반 간단한 방열판	히트싱크, 히트 파이프 등 최적화
패키지	기 개발된 샘플용 패키지	타겟 시장에 최적화된 방열 및 폼팩터 맞춤 제작
테스트	단순 기능 테스트	Probe Test, Final Test, System Level Test 등 제품 양산 테스트 전반
신뢰성 테스트	양산 선진화 작업시 필요	양산 출하 및 파운드리의 양산 공식 인정을 위한 각종 신뢰성 테스트

## □ 지원대상

- 국내 AI반도체 팹리스 기업(단독)
  - \* 단독(1개 社) 과제수행 형태로만 참여가능하며, 기업(대학/기관) 간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

## □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

○ (지원규모) 총 10개 과제, 과제당 최대 19.6억원 이내 지원(총 121억원)

지원분야	공정(나노)	지원규모	비고(평균)
Α	2~20 미만	4개×1,960백만원 = 7,840백만원	12, 14나노 공정
В	20~30 미만	3개×1,060백만원 = 3,180백만원	28나노 공정
С	30 이상~	3개×360백만원 = 1,080백만원	40나노 공정

- \* 총 사업비 규모, 협약체결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는 주무부처(과학기술정보통신부)의 예산 상황, 전담기관이 지급받는 사업비의 조정 등에 따라 변동(감액) 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사업 협약서에 포함된, 지원 규모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\* 본 과제는 비R&D사업으로, 간접비/연구수당 산정 불가, 기술료 미징수
- ※ 지원분야별 미달 또는 선정평가 결과 해당분야 선정대상이 없는 경우, 타 분야 지원과제중 평가 점수(고득점순)와 지원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지원 할 수 있음
- (지원내용) 국산 AI반도체 설계검증 시제품 제작용 MPW 비용 등 지원
  - \* MPW 비용 : SW개발, AI반도체 설계IP 라이선스 구매, 설계검증(프론트엔드, 백엔드 디자인서비스), 파운드리 MPW 셔틀비용, 패키징 비용 등
  - ※ 사업성과물 : MPW 제작소요 평균기간 1~2년을 감안, '25년 사업기간 내 지원 통한 'AI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계약서' 및 'MTO(Masking Tape-out) 체크리스트' 제출(종료시), 차년도 최종 패키지화된 AI반도체 제출(실물)
    - 최적화된 AI반도체가 탑재된 시제품 제작 지원, SW 최적화 및 HW·SW 성능검증 등 사업비 지원

구분	주요 지원 내용			
시제품 제작	• (시제품 제작) AI반도체 기능 테스트를 위한 패키지와 시제품 제작과정 종합 지원			
SW개발·최적화	• (SW 최적화) 패키지에서 펌웨어(FirmWare), OS(Operating System) 소프트웨어간 호환성 확보 및 기능구현 등 SW개발 지원			
	• (기능 테스트) 개발된 SW 기능 검증 지원			
성능검증 및 테스트	• (성능 검증) HW 시뮬레이션 성능검증 지표 마련, 검증방법 계획서, 국가공인시험기관(전담기관 협의) 시험방법에 따른 객관적 성능 검증 등 지원			

## □ 공모방식 및 지원기간

- (공모방식) 자유공모
- (지원기간) 협약일\*(2025.7.1.)~2025.12.31.
  - \* '25. 7. 1일자로 추진예정(사업비 집행기준일)
  - \* 상기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, 정부정책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

## □ 지원조건

- (참여형태) 국내 AI반도체 팹리스 기업 단독 참여만 가능
  - \* 단독(1개 社) 과제수행 형태로만 참여가능하며, 기업(대학/기관) 간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
- (자격요건) 국내 AI반도체 팹리스 기업으로, 시제품 AI반도체 사업화를 추진중인 기업
- (민간매칭) 총사업비는 지원금과 민간부담금(현금, 현물)으로 구성
  - 총사업비 구성 비율은 수행기관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, 정부지원금은 심의위원회의 사업비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    - ◎ 총사업비 = 정부지원금 +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
      - \* 정부지원금 : 수행과제의 컨소시엄이 지원받는 금액
      - \* 민간부담금 : 수행과제의 컨소기엄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

#### <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편성 기준 >

#### 1. 정부 지원금 기준

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
총사업비의 75% 이하	총사업비의 70% 이하	총사업비의 50% 이하

#### 2.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기준

중소기업,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	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	대기업	그 외
민간부담금의 10% 이상	민간부담금의 13% 이상	민간부담금의 15% 이상	필요시 부담

- \* '평균매출액등'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력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함
- ◆ **기업규모 구분 (**중소.중견.대기업 등의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)
- 1. "중소기업"이라 함은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(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)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
- 2. "벤처기업"이라 함은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제2조의 2(벤처기업의 요건)에 따른 기업
- 3. "중견기업"이라 함은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
- 4. "대기업"이라 함은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에 속하는 기업
- 5. "그 외"이라 함은 대학,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등

## □ 의무사항

- (착수보고) 협약 체결 후, 과제 수행개시 시점 **착수보고회 참여**(1회)
- (중간보고) 중간 성능점검(HW/SW) 결과\* 및 수행현황 등 보고서 제출(연 1회)
  - \*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(전담기관 사전협의) 통한 성능검증 결과
- (실태점검) 과제수행 현장에 대한 실태점검 수검(연 1회)
  - \* 산학연 전문가 및 전담기관 간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 현장실태점검 수검
- **(결과보고)** 과제 결과평가 참여 및 **수행결과물\* 제출**(연 1회) <필수 제출 수행결과물>

순번	세부내용	비고
1	■설계칩 시뮬레이션 결과서 (주관기관) ■SW개발, HW시뮬레이션 검증 등 시험결과서(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)	전담기관 제출
2	■MTO(Masking Tape-out) 체크리스트	전담기관 제출
3	■ AI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계약서′	전담기관 제출

\* 차년도 최종 패키지화된 AI반도체 제출(실물)

- **(성과확산)** 전담기관 주관 성과공유 간담회/전시회 등 참여하여 과제 진행성과 발표 및 공유(연 1~2회)
- **(정산보고)** 우리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(사업종료 후, 2개월 이내)
- (실적보고) 성과 활용과 관련하여 우리 원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,
   사업 종료후 실적 현황 요구시 과제종료 후 3년간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실적 조사에 성실히 참여(매년 1회)
- (성과공유) 우리원이 주관하는 성과공유 간담회 등을 통하여 과제 진행 성과 발표 및 공유

### □ 검토사항
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(기관/기업, 장, 총괄 책임자 등)는 신청 불가
  - ☞ 제재정보 검색: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
  - ※ MY 제재 조회에서 본인제재 확인, 소속기관제재 확인 검색 및 확인서 다운로드 가능
- ㅇ 다음 각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검토 대상
- 1. 기업의 부도
- 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)
- 3.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 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)
- 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다만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)
- 5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인 경우
- 6.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
- 7.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

## □ 참고사항

o (협약일) '25. 7. 1일자로 추진예정(사업비 집행기준일)

## 2 사업신청 및 접수

## □ 사업계획(신청)서 전산접수 안내

- 사업계획(신청)서 다운로드 후 작성
-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nipa.kr) → 알림마당 → 사업공고 → 'AI반도체 조기 상용화 및 AX 실증지원' 사업 통합 공고 → '2025년 AI반도체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' 첨부파일 → 다운로드
- 공고기간 : 2025. 5. 29(목) ~ 2025. 6. 30(월)
- ㅇ 전산접수
- 접수기간 : 2025. 6. 12(목) ~ 2025. 6. 30(월), 15:00까지
- NIPA 사업관리시스템(NXT)을 통한 전산접수

(접수 URL) : https://nxt.nipa.kr

- ※ 접수 URL 변경시 홈페이지 통해 추가안내 예정
- ※ 접수기간 준수 요망(마감시간(15:00) 이후, 접수신청 불가)
- \*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하며, 서류 제출 전 신청자격, 제출서류, 신청양식, 작성내용 등 사전에 작성 요령에 관해 확인 후 최종 제출 요망

## □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(2025 AI반도체 조기 상용화 및 AX 실증지원 사업설명회)

○ 2025. 6. 11.(수) 14:00~17:00,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 8

## □ 전산 접수시 유의사항

#### - <사업계획(신청)서 전산접수 시 유의사항>

- o 사업계획(신청)서 접수 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**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**
- o 사업계획(신청)서 최종본이 완성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하시기 바라며,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, 입력내용은 사업계획(신청)서와 동일하게 작성
- o 전산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절차 안내 및 사업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전산접수 진행
- o 전산접수는 사업계획(신청)서 최종본 및 관련서류를 업로드한 후, 최종'제출'이 되어야

접수가 완료 되며 최종'제출'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접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.

- o 사업수행계획서, 발표자료 및 증빙자료는 PDF 제출 권고
- ※ 마감시한 이후엔 접수 불가하며,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2~3일 이전에 제출 권고
- ※ 전산 시스템 문의 : ☎ 070-5151-8215 / 070-5151-8239, nxt\_support@nipa.kr

## □ 전산접수 시 필수 제출서류

○ 서류는 아래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제출하고, 별첨의 '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및 요령'에 따라 작성

#### < 전산 접수시 제출서류 >

순번	제출 서류	양식	비고
1	사업계획서	양식	표지 직인 포함 제출
2	사업계획 발표자료(PPT형식)	별도	주관기관 제출
3	확약서, 현금출자확약서	양식	주관기관 제출
4	사업자등록증	별도	주관기관 제출
5	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	별도	주관기관 제출
6	최근 년도 결산보고서(23년, 24년)	별도	주관기관 제출
7	중소기업 확인서	별도	주관기관 제출
8	과제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	양식	주관기관 제출
9	참여인력 신규채용 및 정규직 확인서 (일자리창출 증빙 서류)	양식	주관기관 제출
10	과제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	양식	주관기관 제출
11	실적증명서	별도	주관기관 제출
12	평가항목참조표	양식	주관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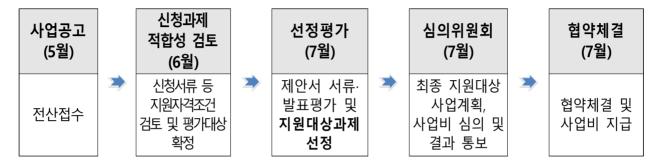
※ 전산접수 시 제출서류(자기진단서 등) 중 허위사실기재가 있는 경우 협약(지원)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요망 Ш

## 지원과제 선정 방안

## 1 선정 절차

#### □ 지원과제 선정절차

○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적합성 검토, 서류·발표 평가를 통한 선정 평가 및 심의·조정을 거쳐 최종 지원과제 확정



## 2 평가 방법 및 기준

#### ① 적합성 검토

- (개요)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,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
- (평가대상) 접수과제
- (검토방법) 사업계획(신청)서, 첨부·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NIPA 내부검토
- (주요 검토항목) 접수내역, 신청자격,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

구분	검토항목
접수	o 전산접수 완료 후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의 적정성
	o 지원 대상 해당 여부 (* 유사·중복과제 제외 등)
관련	o 타 정부사업 기술료 및 정산환수금 완납 여부
규정	o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참여 제한 여부 (기업/기관, 대표자, 총괄책임자의 참여제한 등)
	o 기타 규정이나 공고 내용에 대한 위반 여부

<sup>※</sup> 중대 문제(제출서류 미제출 등) 발견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

#### ② 선정평가(평가위원회)

- (개요) 평가위원회의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
- (평가대상)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
  - ※ 신청 과제수에 따라 서류·발표 통합평가(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와, 총괄책임자 발표 동시평가)로 진행 가능(통합평가시 발표평가 항목 및 배점 적용)
- (평가방법) 총괄책임자 발표 평가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
  -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 평균 소수점 첫째자리(둘째자리 반올림)까지 산정
  - ※ **통과기준**은 최저 "보통(70점)"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함(90점 이상 "매우우수", 80점 이상 "우수", 70점 이상 "보통", 60점 이상 "미흡", 60점 미만 "매우미흡"으로 평가)
- o (평가위원)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
- (평가기준) 4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으로 구성

평가항목	세부 평가기준	배점
사업계획 적정성	o 사업기간내 과제수행을 위한 시제품 제작 사전 준비도 o 지원사업 이해도, 추진 계획 및 방향의 구체성	20
(25)	o 예상 성과목표, 최종 결과물의 명확성 및 적정성 o 제시된 성과 목표 및 결과물에 대한 기대 성과	5
사업 추진체계	o 사업총괄책임자, 실무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사업 수행경험 및 전문성 보유 여부	10
및 역량 (30)	o 수행기관(주관) 관련 보유기술 등 수행 역량 우수성 o AI반도체 시제품 제작지원을 위한 목표시장 조사·분석 및 본 과제 의 목표시장내 시장성·타당성	20
	o 목표시장 내 국내외 수요 및 수행기관 기술역량 우수성 o 목표시장 진입 실행전략의 구체적 실행계획 적합성	5
	o 시제품 제작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	15
사업 경쟁력 및 우수성 (40)	o 제안 과제의 내용타당성, 수행일정 구체성 및 사업기간 내 완료 가능성 o 정부지원 규모 대비 제안한 성과 목표 항목의 다양성, 적합성 및 성과목표치 수준의 적절성	10
	o 제안 과제의 AI반도체 시제품 제작 가능성 및 확장성 - 사업기간 중 수행한 과업 산출물 및 성과 활용 가능성 - 사업 종료 후 다양한 국가, 지역 등으로 글로벌 확장성	10
일자리 창출(5)	o 본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전략 및 목표	

<sup>※</sup> 동점자 발생 시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 확정

## ③ 심의・조정(심의위원회)

- (개요) 선정 평가결과(순위) 및 지원 가능 예산을 고려한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
- (심의·조정대상) 평가위원회의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
- (심의·조정방법) 심의위원회는 선정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과제 사업 범위, 예산조정(안)을 확정한 후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
  - 심의·조정(안)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, 차순위 과제와 협의하여 최종 지원과제 확정
- (심의·조정위원) 외부 전문가 3~5인 내외로 구성 ※ 필요시 평가위원 중 1인 이상을 심의위원으로 위촉 예정

## IV

## 사업수행 안내 및 유의사항

## 1 사업 수행 안내

## □ 관련규정 및 근거

- 「2025년 AI반도체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」은 본 사업안내서, 협약서, NIPA 지원사업관리요령 및 아래 관리 규정에 따라 수행·관리됨
  -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 규정 및 부속지침
  -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
  -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
  - 기금사업 결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
  -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등 제반 규정
  - ※ 상기 관련규정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> 첨부파일 중 "관련규정" 참조

#### □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

- (협약시기) 지원과제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(NIPA)과 협약체결
- (협약방법) 우리원 홈페이지(http://www.nipa.kr)에 협약서 및 협약서에 명시된 첨부 서류를 등록하고 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 체결
- **(사업비지급)** 연2회 분할 지급(협약 후 70%, 중간점검 후 30% 지급 예정\*)
  - \*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, 사업비 지급관련 세부 내용은 협약체결시 최종 확정하여 안내
- **(이행보증)**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 전부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 권 제출필요

#### <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>

순번	제출 서류 주관기관		참여기관
1	사업수행계획서	0	해당없음
2	확약서	0	해당없음
3	자기진단서	0	해당없음
4	참여인력 신규채용 및 정규직 확인서	0	해당없음
5	과제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	0	해당없음
6	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	0	해당없음

순번	제출 서류	주관기관	참여기관
7	법인 등기부등본	0	해당없음
8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0	해당없음
9	사업자 등록증	0	해당없음
10	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	0	해당없음
11	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등(계약서 사본)	0	해당없음
12	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(사업 <mark>종료일 +150일 이상</mark> )	0	해당없음

※ 위 서류는 협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필수 서류로, 제출 서류 불충분 시 협약(지원)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요망

## □ 주요 산출물 및 활동

'25년 사업 수행 주요 활동 및 산출물은 아래 표와 같으며, 사업 수행 필요여부에 따라 가감 될 수 있음

구분	주요 활동	시기	산출물
착수준비	o 사업범위 최종합의 o 사업추진계획서(Project Implementation Plan) 작성	7월	o 사업수행계획서
중간점검	o 사업 수행상황 보고 o 중간 성능점검 결과 제출 (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)	9월	o 중간보고서 o 중간 성능점검 결과서
실태점검	o 사업 수행현황 현장점검 - 주요 마일스톤 점검 및 계획(안) 점검	10~11월	o 점검보고서
결과보고	<ul> <li>O 최종 사업 결과보고 및 최종 산출물 제출</li> <li>O 최종 성능점검 결과 제출</li> <li>(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)</li> <li>O 최종 결과 평가</li> </ul>		<ul><li>0 최종 결과보고서</li><li>0 최종 산출물</li><li>0 최종 성능점검 결과서</li></ul>

과제 수행결과로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및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이 단독 소유

< 최종 산출물 목록 >

순번	세부내용	비고
1	▪설계칩 시뮬레이션 결과서 (주관기관) ▪SW개발, HW시뮬레이션 검증 등 시험결과서(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)	
2	▪MTO(Masking Tape-out) 체크리스트	
3	• AI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계약서'	

- \* 차년도 최종 패키지화된 AI반도체 제출(실물)
- ※ 단계별 최종 산출물은 공문 및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

## 2 유의 및 제재사항

## □ 유의사항

- ㅇ 사업비 편성 시(인건비 포함) 각 비목별 편성 한도는 없음
  - \* 단. 심의(심의·조정)위원회 등의 검토 후 비목별 편성금액을 수정 요구할 수 있음
  - \* 사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, 우리 원은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, 원가조사서 등 관련 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
-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, 반납시 정부와 민간 비율대로 반납함
-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비 전용의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, 과제수행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함
- 지원금은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지원금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작성유지하여 우리원(전담기관)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
-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비용을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, 지원금 사용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 정산 시 부당집행 사례에 대해 우리원 (전담기관)에 반납하여야 함
- 추경사업은 협약기간이 길지 않아 사업비 집행이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함
- 수행기관은 산출물 및 기타 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관련 문서를 사업수행계획에 의거하여 제출하여야 함(착수, 중간, 완료보고서 등)
- 평가에서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에서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
-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시 우리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을 통보하여야 함

## □ 제재사항

○ 지원금을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,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, 과제의 불성실수행 평가결과 등 사유 발생 시 귀책정도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IV

## 기타 사항

## 1 선정취소

## □ 선정취소 대상

- 선정평가 이후 아래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,
   해당 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  -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  -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,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
    - \* 단, 기존 과제의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제 성격으로서 기존 과제와 차별성이 있는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우는 예외
  -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 -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
  -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(기업)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
  - 1. 기업의 부도
  - 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)
  - 3.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 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)
  - 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다만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)
  - 5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인 경우
  - 6.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
  - 7.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
- ㅇ 과제선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
  -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  -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

- 타기관의 IPR(지식재산권)등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-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 수행했거나 수행중인 경우
-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
-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
- 지원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
- 기타 협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## 2 문의처

## □ 사업관련 문의처

○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민정 수석 (mjkim@nipa.kr/043-931-5845)

## □ 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처

구분	연락처
사업관리시스템(NXT) 담당자	070-5151-8239, 8215 / nxt_support@nipa.kr